근로자파견계약서





갑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을 : 주식회사 키스템프

근로자 파견 계약서

사용사업주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이하 "갑"이라 함)와 파견사업주 **주식회사 키스템** 프(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사이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에 관한 당사자 간에 미리 그 책임과 의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①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을"이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갑"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 게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③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④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업무 내용 및 근로 장소)

- ① 파견근로자의 업무는 파견법 제5조 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한한다.
-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어,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있으며, 해당사유 발생시 3항에 기재한다.
- ③ 파견사유 : 파견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파견을 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 ④ 파견근로 업무 : 배달, 운반 및 검침관련 종사자의 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913)
- ⑤ 근로 장소
 - 1. "갑"의 회사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5(청호리))

(실근로장소 : 상동의 제조기술팀)

2. 근로 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및 "을"과 "갑"의 협의 하에 근로 장소를 변경 할 수 있다.

제4조 (근로자 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

- ① 파견기간 : 2016년 09월 01일 ~ 2016년 11월 30일
- ② 파견근로 개시일 : 2016년 09월 01일
- ③ 파견근로기간 동안 파견근로자의 증가 또는 파견근로자의 사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근로자가 변동이 있을 시는 새로이 배치하며, 새로 배치된 근로자의 파견근로 개시일 및 종료일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부록에 명시한다.

제5조 (파견근로자)

- ① 파견인원 : 01 명
- ② "갑"과 "을"은 파견근로자의 증감 등 인원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부록을 운영하여 증감을 표시한다.

제6조 (근로자파견의 대가 및 지불)

- ① 금 액: 파견근로자 1인 월간 이백만오천이백일십원원 (2,005,210원) (부가세 별도)
- ② 지불조건: 현금 결제(온라인 입금)
- ③ 청구기준: 당월 1일 ~ 당월 말일
- ④ 청 구 일: 익월 5일
- ⑤ 정산기준: 실일수 적용
- ⑥ 입 금 일: 익월 20일
- ⑦ 이 때 1개월 미만자는 일할 계산한다.
- 8 파견근로자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 법적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을"이 "갑"에게 별도로 청구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지급 하도록 한다. 단, "갑"이 "을"에게 매월 파 견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는 경우, "을"은 적립된 퇴직금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 하며 차액 부분 발생시 "갑"에게 별도 청구하고 이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 한다.
- ⑨ 사용사업주인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 니하거나 지연할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에 있어서 "갑"이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금의 변경협의)

- ① 경제여건의 변화 및 물가인상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쟁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갑"의 사정에 의거 인상협의가 지연될 시에는 재계약 일자로부터 합의 일자까지 기간의 계약금액 인상분을 소급 지급한다.
- ③ 사회보장보험율이 변동될 시에는 총 파견비도 변경된다.
- ④ "갑"이 "파견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 또는 특별 성과비 지급 시 평균임금이 변동되어 간접비가 변동된다.

제8조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자에 관한 사항)

지휘명령자: "갑"의 회사 제조기술팀 부장 최광업 (TEL:031-8047-7351)

제9조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

- ① 사용사업관리책임자 : "갑"의 회사 경영지원본부 부장 권기용 (TEL:031-8047-7131)
- ② 파견사업관리책임자 : "을"의 회사 인재파견부 이사 배 철 (TEL:02-6719-6315)

제10조 (시업 및 종업의 시각)

- ① 취업시간 : (월-금) 08:30 ~ 17:30 (주40시간 근무)
- ② 휴식시간 : 12:00 ~ 13:00 (1시간)

단, 시업과 종업의 시각은 사용사업주의 업무기준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다.

제11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갑"이 파견근로자에게 부득이하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명령할 경우,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 및 "갑"의 내부규정에 준한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또는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 (휴일・휴가)

- ① "갑"은 "을"의 파견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휴일 · 휴가를 유급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1.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주휴일, 근로자의 날)
 - 2. "갑"의 취업규칙에 따라 "갑"의 동일직종에 근무하는 자에 준한 정기휴가 및 경조휴가
 - 3. 연차휴가 (파견근로자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하여 "갑"에게 청구한다.)
 - 4. 출산전후휴가

제13조 (복리후생)

파견근로자는 "갑"의 복리후생시설(식당, 휴게실, 운동시설 등)이 있을 경우 그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

제14조 (파견근로자의 자격기준)

- ① "을"은 파견근로자를 선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자격이 있는 자를 "갑"과 협의하여 선임, 배치한다.
 - 1. 연령 : 협의
 - 2. 경력 : 협의
 - 3. 학력 : 협의
- ② "갑"과 "을"은 업무상 필요로 인하여 합의 시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설정 할 수 있다.

제15조 (파견근로자의 징계 및 교체)

- ① "갑"은 "을"의 파견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항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의 징계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1. 잦은 근무지 이탈
 - 2. 빈번한 결근
 - 3. 고의적인 태만
 - 4. 제14조의 자격요건 상실
 - 5.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

제16조 (징계 및 교체절차)

- ① 파견근로자의 징계 및 교체절차는 다음 각항에 의거 진행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 1. "갑"은 해당근로자의 징계/교체요구서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 2. "을"은 "갑"의 통지를 받은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근로자의 징계의 양정을 결정한다.
 - 3. 징계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대체 근로자를 파견한다.
 - 4. 징계가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교체예정 파견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제17조 (시설의 제공)

- ① "갑"은 본 계약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확보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 한다.
- ② "을"의 근로자는 시설과 장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 (안전 및 보건)

- ① "갑"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제23조에 의거 업무수행 시 필요한 제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을"은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계속 근로가 어려울 때에는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및 "을"의 취업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③ "을"은 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급여신청을 함에 있어 "갑"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최대한 협력한다.

제19조 (책임)

- ① 파견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② "갑"은 파견근로자에게 현금 및 귀중품의 운반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접근을 금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 등 귀중품 운송법에 따라 "갑"의 무장 경호원과 담당 직원이 대동하여야 하며 방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을"의 파견사원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④ "을"은 파견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운용한다.
- ⑤ "갑"은 "을"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제반 노동관계법규 및 한 본 계약의 관련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책임이 있다.

제20조 (근무수칙)

"갑"과 "을"은 파견근로자의 근무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교육한다.

제21조 (소집교육)

"을"은 파견근로자가 근면,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고 업무수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집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출장비 지급)

파견근로자가 공무에 의거 출장 시는 "갑"은 "갑"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를 "을"이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23조 (양도금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저당할 수 없다.

제24조 (부록의 운영)

"갑", "을" 쌍방은 계약상의 편의를 위하여 부록을 작성하여 인원 및 기타 변경사

항이 발생 시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지)

- ① 본 계약은 제1호~제4호에 해당할 때에 "갑", "을"상호 협의 하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 제5호, 제6호의 경우에는 합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1.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을 때
 - 2. 재산에 대하여 경매, 강제집행 등을 받았을 때
 - 3. 파산, 화의, 회사정리, 회사갱생 등의 신청이 있는 때
 - 4. 영업의 전부를 폐지하거나 청산에 들어갔을 때
 - 5. 쌍방이 본 계약조항을 현저히 위반하였을 때
 - 6. "갑"과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를 합의하였을 때
- ② "을"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전에 해약통보를 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1개월간의 근로자파견대가를 지불하여야 하고 "을"은 이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③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을"의 파견근로자를 중도에 정사원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갑"은 "을"에게 채용대행 수수료 [(이익준비금+행정관리비)*잔여개월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26조 (기타사항)

"갑"과 "을" 쌍방은 업무상 지득한 내용과 계약서 내용 및 이에 준한 보안사항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7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 해석에 상호이견이 발생하거나 본 계약서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일반적 관계를 참고로 상호협의 하여 처리한다.

제28조 (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서의 유효함과 이를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6 년 09 월 01 일

"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5 (청호리)

주 식 회 사 원 익 아 이 피 에 스 대 표 이 사 변 정 우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6 삼화타워 4층 주 식 회 사 키 스 템 프 대 표 이 사 유 수 중

(부록)

본 계약 제4조, 제5조,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록으로 계약한다.

- 아 래 -

1. 파견근로자 인적사항

순서	근무장소	소재지	성명	생년월일	학력	자격	업무내용	파견기간
1	주식회사 원익 아이피에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5 (청호리)	윤석주	94.07.22	고졸	제 14조 참조	배달, 운반 및 검침관련 종사자의 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913)	2016.09.01 ~ 2016.11.30

* 파견사유 : 파견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파견을 하는 경우에만 작성

* 최초 파견 개시일 : 2016 년 09 월 01 일

* 1인 월간 총 파견근로 서비스요금 : <u>₩ 2,005,210 원(부가세 별도)</u>

2. 총 파견인원 : 01명

3. "갑"과 "을"은 파견근로자에게 법 제20조 및 제34조의 파견사업체와 사용사업체의 고용주 가 사용주로서의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2016 년 09 월 01 일

"갑"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5 (청호리)

주 식 회 사 원 익 아 이 피 에 스 대표이사 변정우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6 삼화타워 4층 주 식 회 사 키 스 템 프 대표이사 유수중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키스템프 Human Resources Total Service

대표이사 유 수 중	731 : VAT포함	₩2,205,731	100.0%	₩2,005,210	파견비(총계) (TOTAL SERVICE CHARGE)	
주식회사 KIS TEMP 서울시 중구 응지금도간 16 사하다이 7초		법인세 공제전 금액임	5.0%	₩95,490	이익준비금(PROFIT)	
			15.4%	₩309,720	소 계(SUB-TOTAL) (B)	
교육훈련비,직원급여,사무실운영비,홍보선전비,업무추진비		계약사무처리 규칙 준용	5.0%	₩90,940	(17)행정관리비(ADMINISTRATION EXPENSE)	_
		경조사비	1.0%	₩20,000	(16)복리후생비(WELFARE EXPENSE)	_
	2 31		0.0%	₩0	(15)건강검진비(MEDICAL EXAMINATION)	
장애인고용촉진법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مص	948,494*27/1000	1.3%	₩25,600	(14)장애인부담금(AN ALLOTMENT~NONE EMPLOYMENT FOR A HANDICAPPED PERSON)	
		보수월액 * 5/1000	0.4%	₩8,000	(13)사업소세(BUSINESS TAX)	ഥ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제 13조 제 14조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		보수월액 * 14.64/1000	1.2%	₩23,420	(12)산재보험(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_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제 13조 제 14조		보수월액 * 11/1000	0.9%	₩17,600	(11)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に
국민건강보험법 제 63조, 제65조, 제67조, 제68조 의거		보수월액 * 3.06% + 건강보험료 * 6.55%	2.6%	₩52,160	(10)건강보험(HEALTH INSURANCE)	
		보수월액*4.5%	3.6%	₩72,000	(9)국민연금(NATIONAL WELFARE PENSION)	
연 봉: ₩19,200,000	근로자 월 세전급여 : #1,600,000	근로	79.8%	₩1,600,000	소 계(SUB-TOTAL) (A)	\parallel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념주에게} 청구	발생시 정산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청구	0.0%	₩0	(8)퇴직적립금 (RETIREMENT ALLOWANCE)	_
		사원식 당운 영	0.0%	₩0	(7)식대보조 (A CHARGE FOR FOOD)	
	실주에게 청구 	발생시 정산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청구	0.0%	₩0	(6)상여금(BONUS)	
	근로시간 (발생시 사용사업주에게 청구)	(통상임금)/209+*2*야간근로시간 (발생시	0.0%	₩0	(5)야간수당(NIGHTTIME ALLOWANCE)	
	J근무시간 (발생시 사용사업주에게 청구)	(통상임금)/209H*1.5*휴일근무시간 (발생	0.0%	₩0	(4)휴일근무수당 (HOLIDAY ALLOWANCE)	띠건
근로기준법 제60조	^{[인연차개수(퇴사시 정산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청구)}	(통상임금)/209*8H*미소진연차개수(퇴사시	0.0%	₩0	(3)연차수당 (ANNUAL PAID HOLIDAY ALLOWANCE)	_
	}근로시간 (발생시 사용사업주에게 청구)	(통상임금)/209H*1.5*연장근로시간 (발생	0.0%	₩0	(2)연장근무수당 (OVERTIME ALLOWANCE)	ᅜᆫ
		1월 이 나 나	79.8%	₩1,600,000	(1)기본 급 (BASIC SALARY)	
다	₩ 산출내역		비율(%)	먀	가	
사회보장보험요율이 변동될 수당지급시 평균임금이 변동!	파견비 세분 배역서	파견비		- F	(월 세전 급여액: 160만원)	
☞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입니다.				성분류: 913)	배달, 운반 및 검침관련 종사자의 업무 (한국표준직업부류: 913)	